

예산총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8,779,251	9,863,378
일반회계	310,690,641	9,320,719
특별회계	18,088,610	542,658
기타특별회계	18,088,610	542,65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91,787	14,754
주차장 특별회계	10,097,043	302,91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69,900	26,097
기반시설 특별회계	1,317	40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761,692	22,851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09,600	9,288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5,557,271	166,71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738,835천원(일반 3,106,900천원, 재해·재난목적 14,631,93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예산서 자원표기

[국] 국고보조금, [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 기금

[특] 특별교부세, [별] 특별조정교부금, [시] 시비보조금, [구] 자체자원